

이화사회과학원 규정

2014. 9. 26. 제정

2018. 6. 2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(이하 “사회과학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사회과학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, 사회조사, 정책분석, 의사결정 등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기여하는 전문적 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과학대학 소속 각 전공 학문간의 학제연구
2. 정부, 언론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 수행
3. 사회과학과 관련된 학술서, 교양서, 전문잡지 등의 출판
4.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
5.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

제4조(원장·부원장) ① 사회과학원에 원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원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③ 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사회과학원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사회과학원에 사회복지연구소 커뮤니케이션·미디어연구소, 아동가족연구소,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등 사회과학 관련 부설 연구소와 센터, 프로젝트 팀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16.12.9.)

② 연구소는 해당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·연구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센터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·연구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프로젝트 팀은 해당 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·연구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행정실은 사회과학원 운영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연구소장·센터장·팀장) ① 사회과학원에 속한 각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, 센터 및 프로젝트 팀에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의 선임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는 각 연구소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16.12.9.)

③ 센터장 및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④ 센터장 및 팀장은 각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) ① 사회과학원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이화사회과학원 규정

② 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 ① 사회과학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제9조(행정실) ① 사회과학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사회과학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사회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화사회과학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, 원장, 부원장, 부설 연구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과학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사회과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회과학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, 연구원의 위촉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사회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사회과학원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, 정부, 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 및 출판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사회과학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부칙(2014. 9. 26. 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(2016. 12. 9. 개정)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